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규정(3-5-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체육특기자의 학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이 규정에서 규정하는 체육특기자란, 본 대학교의 신입생 입학 시 특기자 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본 대학교의 명의로 국제대회, 전국규모 대회, 시도규모 대회 또는 이에 준하는 대회에 선수로 출전한 자도 포함한다. 단, 소속 학과장 및 학장(학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출전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5.10)

제3조(출석) ① 체육특기자는 해당학기의 4분의 2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출전할 경우 출전기간은 공결로 처리한다.

③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합숙훈련 및 출전할 경우 그 기간은 공결로 처리한다.

④ 5교시까지 수업을 받아야 하며 가능한 한 시간을 조정하여 수업에 차질이 없게 한다.

제4조(시험) 체육특기자는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단 시험기간 중 경기가 있을 때에는 추가시험에 응시케 한다.

제5조(성적) ① 체육특기자의 성적은 학칙 제35조에 의거 그 성적을 인정하되, 특혜기준에 따라 성적을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성적특혜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5.10.)(개정 2018. 12. 6)

② 성적 특혜기준은 시도규모 대회는 우승자, 전국규모 대회는 3위 이내 입상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제대회에 출전한자는 C0미만인 교과목에 한해 학업성적은 최대 C0로 인정한다. 단, 해당학생은 근거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교과 담당교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5.10)

③ 성적특혜 기준기간은 해당학기 기말고사 말일까지의 입상실적을 해당학기에 인정하나, 기말고사 이후의 입상실적은 다음 학기에 인정한다.

제6조(학적변동) ① 체육특기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사정에 의한 휴학일지라도 체육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각 중 특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1년이 초과되면 제적 처리 할 수 있다 단 입대휴

학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체육특기자로 입학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동부에서 이탈하는 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③ 체육특기자로 특정단체 또는 서클에 가입하여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또는 운동부발전을 저해하고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유권해석) 기타 사항이나 유권적 해석의 문제는 교무처장, 학과장, 체육부장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